

-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327
-----------	------

2016년 9월 5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5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메트로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다.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확충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
- 지하철 공기질 개선, 친환경 LED조명 교체
- 테마역사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련 사업 등

## 라.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양 지하철 공사예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16. 5월) 이후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17년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출자 예산 편성 전에 출자 동의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수입만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내진보강,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기질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운영기관과 함께 매칭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있음
- 서울시가 검토 중인 '17년 서울지하철 양공사 출자금액은 '16년 대비 98.9%(2,059억 26백만원)감소한 2,081억 28백만원으로 '17년 출자금액이 급감한 주된 사유는 '17년 도시철도공채 부채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16년에 비해 2,430억 57백만원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

○ 세부 출자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비·시비·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16년 대비 26.8%(218억 26백만원) 증가한 815억 86백만원,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 구조물 보강’ 등 시비·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59.2%(185억 97백만원) 증가한 313억 99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이며,

이 중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은 국비·시비·운영기관 신규 매칭 사업으로 29억 45백만원,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은 시비·운영기관 신규 매칭 사업으로 각각 66억 80백만원, 53억 60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임

※ 참고 :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편성검토안)	증감	비고
<b>합계</b>	<b>414,053,500</b>	<b>208,127,856</b>	<b>△205,925,644</b>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0,000,000	46,500,000	16,500,000	국비:시비:운영기관 =40%:30%:30%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9,274,000	14,946,000	5,672,000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	-	2,945,000	2,945,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4,715,000	10,617,000	△4,098,000	국비:시비:운영기관 =30%:35%:35%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5,771,000	6,578,000	807,000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727,000	3,585,000	858,000	시비:운영기관 =50%:50%
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2,527,500	982,500	△1,545,000	
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	790,000	291,000	△499,000	
지하철역 점자블록 설치	1,657,000	-	△1,657,000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	6,680,000	6,680,000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	5,360,250	5,360,250	
선도 테마역사 조성	2,600,000	2,000,000	△600,000	시비:운영기관 =50%:50% (※4호선쌍문역은 시비100%)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00,000	12,500,000	10,000,000	시비:운영기관 =13%:87%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00,000	1,300,000	-	시비역당 1억원씩 출자
공사전출금	336,900,000	93,843,106	△243,056,894	시비 100% 출자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372,000	-	△372,000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2,600,000	-	△2,600,000	
시민안전지킴이 사업	320,000	-	△320,000	

- 서울지하철의 경우 낮은 요금수준과 이를 상회하는 승객 일인당 수송원가<sup>1)</sup>,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등 구조적으로 운영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 내진보강,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출자를 통해 서울지하철 양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원칙적으로 서울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안전 담보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해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출자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2015년 기준 서울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 : 서울메트로 1,185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407원

#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327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메트로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확충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
- 지하철 공기질 개선, 친환경 LED조명 교체
- 테마역사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련 사업 등

다.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양 지하철 공사예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16. 5월) 이후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이영희 (☎2133-2248)